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0,902,215	12,027,066
일반회계	317,117,510	9,513,525
특별회계	83,784,705	2,513,541
공기업특별회계	53,358,859	1,600,7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665,994	1,039,98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692,865	560,786
기타특별회계	30,425,846	912,7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98,789	38,964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75,725	5,27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075,719	32,272
공업단지특별회계	54,492	1,63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900,872	147,0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5,467	76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286,390	8,592
기반시설특별회계	44,951	1,3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563,441	676,90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003,06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